

2002년도 식품안전관리 시책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식품업계의 공동관심 사항과 산업여건의 변화에 대한 업계의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정책 및 전문적인 정보의 취득을 통한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저명인사초청 조찬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8일(목) 서울프라자호텔 4층 난초홀에서 이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초청하여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발표된 「2002년도 식품안전관리 시책」 전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注〉

I. 식품안전관리의 전망과 여건

□ 식품안전관련 주변환경의 변화

- 식량 증산을 위한 농약사용 증가 등 위해 물질의 사용과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대두로 식품오염기회 증대
- 유전자재조합(GMO)식품 등 신소재식품과 다이옥신, 내분비장애물질과 같은 신종 위해물질의 지속검출
- 수입자유화에 따른 식품수입증가, 식생활 행태 및 소비자 기호변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개연성 증가
- 건강·강장식품에 대한 수요확대에 편승, 허위·과대광고 등 국민기만 행위 증가 예견

□ 유통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 상존

- 미량 검출되는 피할 수 없는 오염물질(Unavoidable Contaminants), 무시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하여도 「절대적 안전식품」요구

- 소비자·시민 단체 등의 단편적인 문제제기에 대하여도 민감하게 반응

□ **식품안전관리 업무영역 확대**

-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신소재식품과 위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규명되는 등 식품안전관리대상 확대
- 지속적 규제완화 및 무역장벽 해소등으로 사후관리업무증가
- 사회전반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식품 기준·규격의 국제기준과 조화 및 국제 통상·협력증가

II. 식품안전관리의 추진 전략

1.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 추진

□ **현 실태**

- 각 부처별로 식품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이나 사각 지대 존재로 효율적 안전관리와 국민 기대 욕구에 미흡
 - 농림부(축산물, 농산물), 해양수산부(수산물), 환경부(먹는 물), 국세청(주류), 산업자원부(소금), 식약청(기타가공식품)
- 식중독 등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증가와 신종유해물질의 지속규명 등으로 행정수요 급증 예견
 - 다원화된 관리형태로는 업무수행의 효율화 한계 노출
- 미국 등 선진 각 국에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소비자의 비판등을 적극 수용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 추진
 - 대통령식품안전위원회설치·운영(미국), 식품규격청설립(영국), 식품검사청(캐나다)등
- 식품영업 인·허가 관리의 지방 편중으로 식품안전 자원의 효율적 운영 저해
 - 식품관련업소의 99.9%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관리

따라서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업무 일원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추진 방향**

- 식품업무를 생산·육성관리와 안전관리업무로의 재분배 추진
 - 농림부, 해양수산부등 생산·육성 전담 부서의 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안전관리업무 통합·일원화 추진
- 식품안전관리정책과 집행기능의 통합

- 식품안전정책 수립(보건복지부)과 집행(식약청)의 통합화로 법령개정 등의 정책결정권한 확대
- 국가와 지자체간의 효율적 기능분담 추진
 - 위해도 관리의 전문성 여부, 소비자 이해 관계의 범위(전국적, 지역적)등 객관적 기준 등에 따라 기능배분 추진
- 지방청 기능보강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 지방청의 인적·물적 자원을 대폭 보강하여 기획·기동단속 실시 및 사전예방적 지도·교육 업무 전담

2.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 현실태

- 과학에 근거한 정책결정 기능 취약
 - 식품안전정책 결정시 과학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을 더 고려하는 경향 상존
-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등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및 정보수집·평가능력 제한
 - 첨단분석장비 부족, 잔류실태조사·노출량 및 위해평가 기능 미흡

□ 추진 방향

- 위해분석(Risk Analysis)결과를 토대로 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기준·규격설정 및 정책 우선순위 결정·시행
 - 식품등에 잔류하는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Monitoring 및 선행조사·분석하는 과학적 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해
 - 식품등의 기준·규격 개선 등 효율적위해 관리방안(Risk Management)을 마련하며
 - 위해 평가 및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이해 당사자에게 전달(Risk Communication)하여 공감대를 형성
 - 이러한 과정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하는 시스템 구축

3.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기능 강화

□ 현 실태

- 생산·가공업소가 영세하여 제조 및 종사자의 식품위생·안전 의식 미흡
 - 종업원 5인 미만 제조업소가 전 제조업체의 80% 정도이며 대부분OEM(주문 자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 대량생산·유통 및 저장성향상을 위한 식품첨가물 및 신소재 식품등의 생산·사용량 증대
 - 보존료, 착색료 등의 첨가물과 유전자 조작을 통한 식품 양산

□ 추진 방향

- 위해가능성 배제를 위한 사전예방원칙(Precaution Principle) 도입
 - 현재 과학기술의 제한성 및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해 개연성 식품(성분)등 사용 제한(GMO 등)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 현재 73개업소 지정, 지정확대를 위한 일반모델개발 및 우대조치 지속 강구
- 식품제조업소의 「위생등급제」도입을 통한 자율적 위생제고 유도
 - 업소의 위생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등급이 높은 업소는 적극 홍보, 낮은 업소는 지도·감독 강화

4. 식품안전관리 투명성·신뢰성 제고

□ 현 실태

- 관련단체, 소비자 및 시민 단체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참여 욕구 증대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폭 제한
- 정부·소비자·생산자간의 상호 정보교류체계 미 구축
 - 수집된 정보의 공동 분석 및 평가, 배분 기능 취약

□ 추진 방향

- 식품관련 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의 정책결정 참여기회 확대
 - 식품관련 규정, 기준·규격 제·개정시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업무 수행
 - 지도·단속 분야, 조사·연구분야, 교육·홍보분야 등에서 공동협력 추진
- 식품안전정보의 공유체계 구축
 - 지도·단속, 연구결과 등 식품관련 제반 정보의 신속공개 및 제공
 - 식품안전관련 국내·외 최신정보의 수집·분석·공유기능 강화

5. 식품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도모

□ 현 실태

- 지금까지의 식품안전정책은 산업육성 보다는 규제 위주로 추진
 - 다양한 식품개발 및 제품홍보에 제약

□ 추진 방향

- 건강기능식품 개발 유도
 - 현행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기능성 껌, 다류 등 일반 가공식품에까지 확대 추진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유용성, 안전성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
 - 건강기능식품의 유용성 표시기준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 기준 등 설정

※ 현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 추진중

- 지속적 규제개선을 통한 생산성·자율성 제고
 - 식품공전상의 품질기준을 완화 제품개발의 자율성 부여
 -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자가품질검사기관의 분리를 통한 민간 검사기관의 활성화 도모
- HACCP 지정업체 등에 대한 유인책 마련
 - HACCP지정업체에 대한 우대조치의 마련을 위한 임시조치법 마련 등

III. 2002년도 식품안전관리 시책

□ 2002년 월드컵등 대비 식·음료 안전관리

- 식·음료 안전관리대책 본부 설치·운영
 - 중앙 및 지역본부설치·운영을 통한 식·음료안전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과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확립
 - * 대회기간중 책임관리를 위한 현장 검식관 상주배치(5~7월)

- 경기장·관광지주변 일반음식점등 집중 지도·점검
 - 뷔페식당등 일정규모 이상업소 종사자 및 칼·도마 등에 대하여 대장균, 식중독균등 간이검사 키트 활용 현장 지도·계몽
 - 점검결과 우수업소 [월드위생음식점] 표시마크 부착
- 식중독발생 취약식품인 도시락제조업소 및 집단급식소 중점 점검
 - 식약청, 시·도, 교육청 합동 전국일제 점검(3 ~ 5월)
 - 김밥, 햄버거, 도시락등 위생취약식품 집중 수거·검사
- 식자재 공급업소·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제도적 관리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위탁급식업종」 신설 추진
- 식품안전의 날 지정 등을 통한 식품안전의식고취 및 식중독 예방 홍보
 - 2002. 5. 14(화)를 제 1회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
 - 외국인 출입지역에 대한 식중독예방홍보 등 각종 식품안전의식고취 행사추진

□ 건강기능식품 관리제도 개선

- 소비자 피해예방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건강기능 함유식품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정 추진(국회계류중)
- 국회통과 대비 동 법 하위규정 제정
 -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 및 수입신고지침 마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기능성원료 및 성분 평가기준 마련 등
- 건강기능식품 관련업종신설에 따른 관리인력 조직 보강 추진
 - 본청 신소재 식품과 지방청 인·허가, 신고업무 수행인력 등

□ 식품위생검사기관 효율적 운영방안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관련규정의 정비
 - 검사기관의 구분(식품위생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기관), 지정요건의 강화, 임원의 선임·해임명령등 관련규정의 정비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도·감독강화
 -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eam에 의한 지도·점검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조직·기능개선 유도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적 기관으로 전환토록 유도

□ 중앙기동단속반 효율적 운영 방안

-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식품에 대한 기획 단속 실시
 - 유해가능성이 높거나 개선 필요성이 높은 식품
 - 신물질 및 의약품원료 등의 첨가가능성이 있는 기능성 강조식품
 - 계절적, 지역별 위생취약식품 및 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된 불만도 높은 식품류 등
- 단속의 과학화, 체계화
 - 위해도에 의한 단속항목 집중관리, 단속예고 등 단속기법 개발 전파
 - 단속내용이나 단속업소의 D/B화로 위해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도단속, 계도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확대실시
 - 최신설비 및 국제기준 준수업소의 전문가 초빙교육
 - 업종별 선진업소의 실무책임자를 통한 위해방지 기법 교육
- 위반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 위반 업소명, 제품명 등을 TV, 신문, 식품전문지 등을 통하여 홍보

□ 식품안전 정보의 신속 수집 및 대응체계 구축

- 위해 정보 신속 대응체계 확립·운영
 - 각종 정보 내용분석 및 평가, 등급분류와 신속 대응체계 확립
- 수집 정보에 대한 추가정보, 추적조사 등 관리체계 구축
 - 중·장기적 관리가 요구되는 정보는 Task Force팀 구성·집중관리
 - 신속대응조치를 위하여 관련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잠재적 위해가능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선행조사 실시
 - 국내·외 문제제기 된 위해가능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 이유식·된장·고추장의 AflatoxinB1, 수입 농축과실·야채등의 잔류농약 등

□ HACCP 적용품목의 지속적 확대

- HACCP 적용품목의 확대
 - 김치·절임식품등 4개 식품군에 대한 [HACCP관리기준] 추가 설정

- 빵류등 3개 식품군에 대한 HACCP 적용모델 개발
- HACCP 활성화 방안 강구
 - 식품별 HACCP 강제적용 일정, 재정지원대책, 소비자 홍보 등「장기발전계획 (Master Plan)」 수립
 - 적용업소 우대방안 강구, 교육·훈련기관의 확대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 기술지원, 관리조직 확충 및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소비자 구매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

- 소비자 구매정보 제공을 위한 Allergy등 부작용 표시기준 개정
 - Codex, 미국, 일본 등 제 외국과 국내의 Allergy 유발 개연성 성분 및 관련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실시
 -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 「통합 식품안전 정보관리체계」 기반 구축

- 식품안전 전산시스템 통합연계 관리
 - 「시·군·구 식품위생 전산시스템」을 통합 연계하여 실시간(real-time) 의사결정·관리체계 구축
- 「식품안전 포털 사이트」구축으로 소비자·영업자 등에게 신속·정확한 식품관련정보 제공
 - 「정부전자대표 민원홈페이지」에 관련 사이트 구축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 실시

- 전국 17,000여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4등급으로 분류하여 전산관리
 - 4 ~ 5월 시범평가실시 후 하반기부터 시행
 - 등급분류기준 : ① 기본관리서류 평가 ② 공장환경 및 제조시설평가 ③ 공장 및 현장관리 실태 평가
- 위생등급별 관리방안 마련
 - 상위등급은 자율위생관리홍보 유도, 하위등급에는 식품위생 지도·점검 집중 실시 등
- 업체의 자율적 위생제고 노력이 있는 경우 등급조정실시 예정

□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 수거·검사 대상선정의 효율성 제고 및 위해항목 중심 검사

- 부적합비율 또는 유통점유율이 높은 20개 품목선정, 매월 위해 항목 위주의 수거·검사 실시
- 신규 생산품목 및 문제 식품 신속 수거검사체계 구축
- 품목제조 보고 후 새로 유통·판매되는 식품,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등 사회문 제화 된 식품대상
-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에 대한 우선·집중적 수거·검사
 - 재래시장, 초등학교 주변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류 등
- 신선 영업채류등 유통 농산물에 대한 신속수거·검사 지속실시
 - 사용농약, 검출빈도등을 파악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실시

□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

-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참여제고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협의회」에서 감시대상 등을 선정
 - 전문지식과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인터넷 등을 통한 과대 광고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
- 1399 신고제 활성화 방안
 - 라디오, 인터넷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한 홍보효과의 제고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식품위생법 근거규정 마련
 - 포상금 지급기준, 범위, 대상 등 규정

□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성 확인제도 도입

- 위생취약국가에 대한 현지 정보조사 실시
 - 중국·태국·베트남 등의 위해물질 사용실태 및 식품가공과정 등의 위생상태 등을 현지출장 파악 대처
- 해외 주재관 파견 확대 추진
 - 수입식품의 부적합율이 가장 높은 중국에 4월중 주재관 우선 파견
 - 생산 단계 및 수입전 단계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각종 정보수집 및 국내기업 의 대중국 수출지원 업무수행
 - 안전한 식품 수입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 해소를 위하여동남아, 미국 등에 주재관 파견 방안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인 「공장등록제」 추진
 - 외국의 제조·가공 공장 및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확인 후 등록·관리
 - 등록된 업체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수입검사 일부 또는 전부 면제

□ 수입식품검사 제도의 효율화 추진

- 최초정밀검사의 효율성 제고
 - 일률적인 성분 규격 검사를 지양하고 위해항목 위주로 검사
 - 잔류농약 동시다성분 분석법 확대 및 순위조정(현재 160종 → 172종)
- 무작위표본검사 제도 개선
 - 위해 가능성에 따라 검사비율 탄력 적용(3 ~ 6% → 2 ~ 30%)
 - 부적합 이력이 없는 제품 및 업소에 대한 검사 면제
- 동일사 동일식품 인정제도 보완
 - 동일사 동일제품도 계속 수입시 3년에 1회씩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화등
- 농산물의 서류검사 보완
 - 농산물에 대한 서류검사를 관능검사로 상향조정하고 안전성 의심 품목은 정밀 검사 실시
- 인터넷 수입신고 시스템 구축
 - 수입신고서 인터넷접수 및 검사진행 정보 등 대민 서비스 제공

□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 표시대상 농산물 확대에 따라 표시 대상 가공 식품 추가 지정
 - 농림부에서 2002. 3. 1부터 감자표시제 추가 시행
- 가공식품의 비의도적 혼입치 설정 검토
 - 각 국별 실태 분석과 검사법등 여건을 감안하여 혼입치 결정
 - ※ 국가별 비의도적 혼입치 : 유럽1%, 일본5%, 우리나라3%(자연농산물)
- Non-GMO표시 허용 여부 검토
 - Non-GMO 표시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GMO 기피나 물가상승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음
 - Non-GMO 정의 및 개념, 제외국 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후 허용 여부 결정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교육·홍보
 - 주기적인 소비자 인식도 조사 및 그 결과를 활용한 대상별 홍보 추진
 - 세미나, 합동조사연구 등을 통한 학계·소비자단체·업계와 연계한 교육·홍보 추진
- GMO 관련 국제 협력 강화
 - GMO관련 국제 기준 확립을 위한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관련국과 상호의견 조율

□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과학화 및 국제기준과 조화

- 식품공전체계를 기준보다는 규격위주로 전환하는등 식품의 기준·규격 전면 재검토
 - 품질규격은 완화하고, 위생관련 개별기준은 일반공통 기준으로 모든 식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정
 - 동·식물 원료에 대한 사후관리제도(Negative System)로 전환
- 살균제인 다조메트(Dazomet)등 기준이 미 설정된 농약 50여종에 대한 잔류기준 및 시험법 개정
- 식품중 오염물질 기준·규격 정비
 - 축·수산물에 잔류하는 항생물질 등 34종(신규 27종)에 대한 기준·규격 및 시험법 개정
 - 다류식품 등의 납 기준 및 간장중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잠정 허용기준 설정
 - ※ 3-MCPD는 식품의 산분해과정중 생성되는 오염물질
-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지정품목 확대 및 사용기준 개정
 - 화학적 합성품, 천연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강

□ 식품산업의 지원 육성 방안 강구

- PL(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관련업계와의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신속한 교류를 통하여 PL법에 의한 소비자 배상요인 사전 차단
 - 소비자 단체에 접수된 식품관련 불만사항을 분석, 해당업체 제공
 - 소비자의 배상청구 전 사전에 업계와 소비자간 조정기능을 갖춘 PL구제센터 설립 검토(보건복지부와 협의)
- 식품안전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업계의 참여 확대
 - 관련 규정, 기준·규격 제·개정 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정책참여(전문가 정책포럼 집단) 실시
 - 조사·연구사업, 교육·홍보분야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와 공동업무수행 추진
- HACCP 지정업체 등에 대한 유인책 마련
 - 식품위생법개정을 통하여 HACCP지정업체에 대한 우대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출입·검사면제, 식품진흥기금지원등)
 - 군납, 학교급식 납품시 우선권 부여(관련부처와 협의중)

- HACCP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제고 사업(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추진)을 통하여 관련제품판매촉진 유도
- 규제적 요소에 대한 관련규정의 지속적 정비
- 식품공전상의 품질기준을 완화 제품개발의 자율성 부여
-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자가품질검사기관의 분리를 통한 민간검사기관의 활성화 도모

IV. 지난 간담회시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 건의 사항

- 식품반품량 감소 유도를 위한 식품의 유통기한 제도 개선
 -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은 시중판매가 가능토록 조치
 - ※ 현 제도는 유통기한경과 제품은 판매불가

□ 조치 내역

- 현 유통기한 제도는 '87년도에 도입되어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각인되어 있어 현 제도를 일시에 변경할 경우 소비자의 혼란 및 정책의 불신야기 초래
 - 제도개선의 필요성, 비용 및 편익분석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 검토
 - ※ 식품공업협회 주관으로 식품반품량 감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조사연구실 시중(2002. 1 ~ 6월)
- 조사연구결과가 타당성이 있을 경우 소비자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 공전 개정추진